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2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21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시정고문의 연임규정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, 시정고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한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며,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근거 기준을 마련하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시정고문의 연임 규정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함(안 제3조제2항)

○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신설함(안 제6조).

○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근거 기준을 마련함(안 제7조).

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“2회”를 “1회”로 한다.

안 제6조를 안 제7조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안 제6조)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6조(보안 유지 등)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
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위촉 및 임기) ① (생 략)	제3조(위촉 및 임기) ① (제정안과 같음)
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의 임기 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.	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의 임기 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.
<신 설>	제6조(보안 유지 등)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.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제6조(수당 등)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	제7조(수당 등)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정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시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비전·목표·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
2.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
3.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위촉 및 임기) ①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.

제4조(해촉) 시장은 시정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고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,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운영) 시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면,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고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보안 유지 등)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3.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
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

제7조(수당 등)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

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